

자부심이 올랐다. 우미린이 옳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울산 다운2지구 우미 Lynn 더 시그니처

본 안내문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참고자료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구분	내 용
대상자	<p>[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0.)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p> <p>①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 ②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청약 가능 ** 단독세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전 주택형이 전용면적 84㎡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 ⑥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 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⑦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총족</p>
당첨자 선정방법	<p>① 우선공급(50%)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 ② 일반공급(20%)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추첨제(30%)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 3.31억원 이하 충족하는 자 ※ 우선공급,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p>
경쟁이 있는 경우	<p>·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자부심이 올랐다. 우미린이 옮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울산 다운2지구 우미 Lynn 더시그니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초과 ~ 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 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 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head><tbody><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body></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ul style="list-style-type: none">「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호에 따른 무주택 판정 기준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 위한 규칙으로 자산 평가 시에는 미적용 되어 자산보유기준 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방법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요약 및 편집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